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4.4.8(화) 15:00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정 헌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3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4월 2일

3. 제안 이유

-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등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해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안 제12조제2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등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해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예 따라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